「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」참여기업 모집공고

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 「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 개요
□ 사업목적
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,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·확산
□ 모집규모 : 250개사 내외(예산 소진 시까지) *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(협약) 기업 포함(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 가능)
□ 사업기간 : 협약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*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
□ 운영기관 :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2. 지원요건 및 규모, 내용
□ 지원요건

○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* 기존 사업 참여기업의 재신청 가능

신청 제외 대상

- 1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"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"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
 - *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등
- 2.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·폐업중인 기업
- 3.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
□ 지원규모

-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·유망·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여 한도 및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 바우처 배정
 - * 스타트업(창업 7년 이내 기업)은 보조율 10%, 한도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

< 기술보호 바우처 단계별 지원 >

기술보호 수준	초보기업 (1단계)	유망기업 (2단계)	선도기업 (3단계)		
수준 점수	45점 미만	45~75점 미만	75점 이상		
바우처 한도* 30백만원		50백만원	70백만원		
정부보조율 80% (기본+30%)		60% (기본+10%)	50% (기본)		

* 바우처 한도는 최대 지원금액으로 한도내 조정가능

□ 지원내용

- o (필수코스) 바우처 배정과 기술보호 역량 신장을 위해 모든기업 추진
 - (수준진단) 현장전문가(보안) 방문 및 기술보호 수준 정밀진단
 - (현장컨설팅) 수준진단과 다른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(최대 3회 가능)
 - (수준확인) 기술보호 역량신장 확인 및 선도기업 지정여부 결정

< 기술보호 수준별 점수 및 상태 >

구 분	점 수	기술보호 수준 상태	기술보호 단계
I 단계	75점 이상	기술보호에 대한 결점 및 취약성이 거의 없으며, 기술유출	선도기업
(우수)		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최소가 되는 상태	(3단계)
Ⅱ단계	60점	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,	유망기업
(양호)	~75점 미만	회사 차원의 기술보호 업무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	
Ⅲ단계	45점	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, 기술의 유출	(2단계)
(보통)	~60점 미만	및 침해 정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태	
IV단계	30점	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, 기술의 유출	초보기업
(취약)	~45점 미만	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가져올수 있는 상태	
∨ 단계 (위험)	30점 미만	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을 상존하며, 기술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	(1단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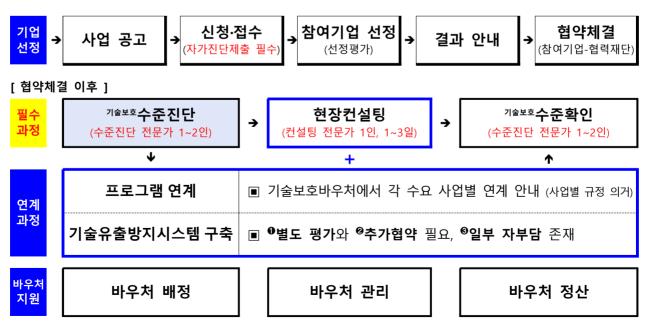
- o (바우처 지원)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바우처 안내 및 연계
- (수요조사) 희망 수요를 감안하여 수준진단을 통해 바우처 확정
- (사업연계) 프로그램별 내규에 의거,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연계

<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>

지원분야		지원내용
	기술보호 컨설팅·교육	[전문가 현장자문] ■ (보안컨설팅) 보안 분석과 솔루션 등 제공 ■ (교육)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파견, 임직원 대상(5명 이상) 교육 지원
기술 보호 예방	보호시스템 구축·운영	[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*, 기술지킴서비스] ■ 기술보호시스템 구축, 라이선스 구입·갱신, 클라우드 사용, 악성코드·랜섬 웨어 SW 구입·사용 비용(보조율 50%, 최대 90%) * 기술보호 바우처를 통해서만 참여 가능(개별사업 단독 지원 불가) *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, 이용 불가했던 '24년-3차 참여기업은 별도 공고(평가)
ગા ઠ	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	[기술자료 임치제도] ■ 기술자료 임치 또는 거래 과정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신규·갱신 비용 지원
	기술보호 정책보험	[기술보호 정책보험] ■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, 영업비밀, 디자인, 실용신안 관련 사건의 법률비용 보장 보험 가입료 지원(보조율 70%, 최대 80%)
기술침해 사후 대응		[손해액 산정,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] ■ 조정·중재에 소요되는 비용,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디지털 포렌식(500만원),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대응 비용 지원
후속지원		■ 협약기간 내에 바우처를 ¹⁰ 전액 소진하고, ²⁰ 수준확인 점수 향상 폭이 우수한 기업에게 추가한도 부여 검토 후 차년도 제공

□ 진행절차

< 기술보호 바우처사업 프로세스 >



3.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및 선정

- 사업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게 별도 안내
- (서류검토)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및 중소기업 여부, 휴·폐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자격요건 확인
- (평가방법) 평가점수 최고-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 고득점 순
 - * (동점시) ① 우대가점 ②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③기술유출 피해기업 순
- (평가대상) 바우처 참여기업은 (A)만 제출/평가,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희망기업은 (A)+(B) 제출/평가(별도 평가 존재)

< (A)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(참고2) >

평가항목	배점	평가 세부내용				
① 핵심기술 보유	35	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				
② 지원 필요성	35	· 보유기술의 기술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바우처 활용계획의 적절성				
③ 기술보호 노력	20	· 기술보호 수준 및 노력				
④ 기대효과	10	· 수립계획 및 목표 타당성				
우대가점	10	· 창업기업, 혁신형기업, 소부장 강소기업, 방산업체,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※ [붙임자료] 우대가점 증빙 제출 별도 안내				
계	110	-				

< (B)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희망기업 (참고2-1) >

평가항목	배점	평가 세부내용		
① 기술보호 추진의지	35	· 기술보호 투자 노력 및 의지 · 기술보호 조직 형태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		
② 사업계획	35	· 기술보호 관련 내규 수립 및 운영 ·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및 노력 현황 · 핵심인력 관리 현황		
③ 기술보호 노력 현황	③ 기술보호 노력 현황 20 · 사업계획(구축 희망 시스템 도입)의 적정성 및 필요성, 사업이해			
④ 시급성 10 · 도입기업 기술 유출시 대내·외 파급력 정도 ·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 관련 투자 현황				
계	100	※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, 예비선정될 수 있음		

4.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

-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
- □ 신청기간 : '25. 2. 17(월) ~ 3. 7(금) 14:00
 - ※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□ 신청서류

	PDF, hwp 또는 word 파일 모두	·제출
구분	필수 제출서류	비고
1	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	hwp
2	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	hwp
3	기업 및 개인(신용) 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 1부	pdf
4	사업자등록증(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) 1부	pdf
5	중소기업 확인서(유효기간 내) 1부	pdf
6	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 확인표 1부 [*]	pdf
7	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(재무제표) 1부	pdf
8	국세 완납 증명서(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) 1부	pdf
9	지방세 납세증명서(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) 1부	pdf
기타	우대가점 증빙 등 기타 관련 서류	pdf
기타	(희망시 필수)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	hwp
기타	(희망시 필수)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(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)	hwp

^{*}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**기업명으로 회원가입** 필수) - 사전예방 —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

5. 유의사항

-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향후「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」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지원불가
- 허위사실 기재, 신청서 작성오류,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,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

- 최종 선정된 기업만 기술보호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계열사 및 협력사, 관계사는 해당 서비스 이용 불가(사업자번호 기준)
- 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 및 운영기관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
6. 문의처

- □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상담·신고센터
 - (관련문의) 02-368-8787

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
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
	위사어케/며					,	성 명		ΠŦ	E0/1/5	경 S	
	회사(업체)명					2	변락망	전화번호 이메일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		석	립일자			_	_	
	법인등록번호	O ਜ਼ 비 ㅎ					0 6 1	디파버기	÷ 1			
	본사주소	우편번호						대표번호 팩스	2			
기업현황	コルス ヘ	우편번호						대표번의	Ż			
	공장주소 		:		·			팩스				
	업 종			주생산품	.			표준산 (분류코드	걸			
	매출액(단위 : 원)	'00년 000,000,	000,000	- 0.0	. '(00년		기술유		유		
	* 결산전이면 추정치	'00년 000,000,	000,000	종업원4)0년		피해경험		무	Γ	
	기술보호	 혀잔자무		00.0.0		1 71 <i>4</i>	늘지킴서ㅂ	<u></u> 人			0.0.0	
참여이력	기술보호	•		00.0.0			을 자료 임: 늘자료 임:				0.0.0	
- M M H	│ 기글포포 │			00.0.0			an a a a a유출방지				0.0.0	
		<u>!</u>				<u> </u>			<u> </u>		7.0.0	
담당자	부 서 직 통 번 호		직	위 대 폰			성 이		명 일			
		이 서며히/;;	유						≝ _			
가입경로	□ 온·오프라인 설명회/교육/상담 □ 추천(기관·기업명) □											
] 기I)		
	□ 창업기업(7					방신	·기업					
		술 보유기업				기스	청사청조	A 71 Of				
케다이므	□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 □ 벤처인증기업 □				1		·소기업(INI 자 발굴육(기연		
해당유무 (증빙제출)	□ 초격차 스타트업1000 선정기업						000Н	n een	0(111	r3) 🗖 °	1718	
	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					기업	부설 연-		기업			
	그린뉴딜 유망기업							장 강소기				
	□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 『					□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						
	T 기스비츠 L	바우처 사업 -	ᅕᄭ게	히서		710	וח ווד ום ו	(신용)정보	두 (이셔	лн, 	
필수			구인계:	칙 시				•			<u> </u>	
첨부서류 (제출확인)	사업자등록	-		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							
(,	기술보오 /	다가진단 결고				기티	증빙 관	전 서듀				
위 내용이	사실과 다름	없음을 확인	합니디	ł.								
		2 0		년	월		일					
			기 업	_								
			대 표	자				(서	경 5	또는 인)	
	대·중소	기업·농	어업	l협력기	대단	<u></u>	나무 총	등장 구	48	하		

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서

※ 페이지 제한은 없으며, 자유롭게 늘려서 작성 가능

<u> </u>	<u> </u>	
□ 보유 핵심기술 -		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		
(예시) 핵심기술 사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 교육, 핵심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000		'안진단과 반기별 직원
│ │※ 정부/기관/지자체의 기술보호지원사	·업 참여이력	
지원사업명	지원기관	참여년도
□ 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/문제점 (해당)	당없을 시 '해당없음' 기재)	
- (문제점)		
- (애로사항)		
- 기술탈취 및 유출피해경험(최근 5년 이내)		
 □ 추진방향과 목표		
- (추진방향)		
- (목표)		

□ '25년 희망 바우처 수요조사

- 본 수요조사 참고사항으로
- ▶ **수준진단 결과**에 따라, 적합한 **바우처**를 **배정**할 예정
- ▶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아래 희망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
- ▶ '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'은 별도평가*를 통해 선정하고, 자부담 존재
- * 종합석차 및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별도 공고 후, 대면평가
- ※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바우처 배정 예정

< 희망하는 바우처 지원사업(필수 선택, 복수선택 가능) >

구분	사업명		활용목적 및 내용
	통합 기술보호지원반	필요성	
	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	필요성	
	기술자료임치	임치건수	
	기술보호 정책보험	보험물	
	기술지킴서비스	희망서비스	
	기술침해 손해액 산정	필요성	
	디지털포렌식 지원	신청배경	(200자 이내)
	기타	사업명	
* ′フ	타'사항은 향후 바우처	확대 시 우선	선 검토

참고 2-1

2025년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

※ 페이지 <u>제한은 없으며, 자유롭게 늘려서 작성 가능</u>

□ 현황 및 문제점
- 현재 기술보호에 관한 문제점
- 기술보호 노력 현황
- 개선 필요성 제시
□ 보유 기술의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
- 도입기업 보유기술의 중요성
□ 지원 필요성
L 시전 글프'S
트이ઇ그지 친도 비스템이 피스서요 그센터스크 표기
-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표기
□ 기대효과
-

참고 2-2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(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)

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

사 업 명	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
신청기업명	

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 및 정부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. 만일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시 협약 해약, 정부 지원금 환수ㆍ참여제한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도입기업명

대 표 자

과제책임자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

기업 및 개인(신용) 정보 수집 · 이용 제공 동의서

대・중소기업・농어업협력재단(이하 "협력재단" 이라 한다)에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'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 따라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(선도기업 육성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사(하)의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수집항목	"기업명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설립년월일, 본점·영업소 등의 소재지, 설립연월일, 연락처(주소, 전자우편주소, 전화번호 등),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(신용거래)정보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, 부도 등), 신용능력정보, 재무상황, 고용에 관한 내역, 기타 신용정보(국세 등 체납정보),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 등에 기재된 기업(신용)정보 등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자료 포함
수집이용 목적	· 사업선정 평가, 사전컨설팅, 수준진단/확인 심사, 현장컨설팅, 지원사업 연계 사업운영
보유·이용 기간	□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지체없이 파기 * 다만,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제외
개인정보 제공	□ 제공대상 : 총괄기관(중소벤처기업부) 및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□ 제공목적 : 사전컨설팅, 수준진단/확인 심사, 현장컨설팅, 지원사업 연계 □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: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름

☞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?	동의함		동의하지 않음	
※ 귀사(하)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를 거부	할 권리가 있습	하니다.		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	을 수 있습니다	ŀ.		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SIMS) 정보활용 동의

- 1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(신청 및 지원) 기업정보의 수집· 조회 및 활용
- 2.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(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), 고용정보(고용보험법 제2조의1), 직장가입자 수(국민건강보험법 제6조) 등
 3.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서 조회·활용
- 4.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- ※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 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?	동의함		동의하지 않음	
※ 귀사(하)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				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	

20 년 월

기업명		대표자				(인)
사업자등록번호	-	연락처	()	-	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

우대가점 및 증빙

□ 우대가점 제출서류(최대 10점)

분야	우대사항	가점	증빙서류
	「방위사업법」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르는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	10점	방산업체 지정서
	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2조, 제14조의3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5에 따라산업 기술(국가핵심기술에 해당)을 확인받은 기업	10점	산업기술(국가핵심기술)확인서
	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	1점	피해사실 입증공문 또는 기타 입증가능 서류
	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2에 따르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	1점	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일 반	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제5조제1항8호에 따르는 환경산업체 및 이노비즈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 하는 중소기업에 따르는 "그린뉴딜 유망기업"	1점	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
	「소재・부품・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3조 1항에 따른 소 재부품장비 전문기업	1점	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서(정부24)
	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기업	1점	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
	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18조의2(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)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), 제18조(세계적 유망기업 육성), 「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(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)에 따르는 혁신기업	1점	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인증서
	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	5점	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
혁신형	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	5점	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
	「벤처기업법」제2조의2 1항의 2호의 가목에 따르는 벤처인증기업	5점	벤처기업 확인서
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	10점	창업기업 확인서 등
창업기업	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(TIPS) 참여기업	5점	참여 협약서
	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	5점	참여 협약서